

## '리더스시티' 공공분양주택 4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 공급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173 일대 (천동, 인동, 효동, 신흥동 일원)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4블록
- 공급 규모 : 공공분양주택 총 1,328세대 중 지구주민 우선공급을 제외한 (공공)일반분양 65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리더스시티' 분양사무소(042-271-9900)등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을 하고 있으나, 간혹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없어 청약에 대한 착오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 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관련 안내사항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택 관리를 사이버 견본주택으로(<http://www.리더스시티.com>) 대체하여 운영됩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서류접수 기간 내 당첨에 한해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고지할 예정입니다.
    - ※ 날짜 및 시간대별로 예약이 가능하나 특정일자(시간)의 쓸림현상 방지를 위해 일자별 접수가능 건수가 제한되고,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 가능인원 - 서류접수 : **당첨자 본인 외 동반1인 / 총 2인** (위임시 대리인 1인 외 동반1인 총2인 입장 가능)  
계약체결 : **당첨자 본인 혹은 대리인 1인 / 총 1인**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①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②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③ 손 소독제,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알 려 드 립 니 다

- 본 단지는 대전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구주민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우선공급을 받으신 지구주민 및 지구주민의 세대구성원은 일반분양 공급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후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735이며, 공고문 및 분양관련 내용은 '리더스시티'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http://www.리더스시티.com>)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브랜드명은 「리더스시티」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실물로 전시되는 타입은 59A, 74A, 84A입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9.30.(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무주택기간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는 2021.07.05.(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이 경우 **일반 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1년 이상(2020.09.30.이전) 거주한 신청자가 대전광역시 1년 미만(2020.10.01.이후) 거주자 및 기타(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기타(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1순위 기타지역 청약일에 청약 접수)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또는 ③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특별공급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기관추천/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	대전시 1년 이상 거주	세종, 충남 대전 1년 미만				
일 정	2021.10.13.(수)	2021.10.14.(목)	2021.10.15.(금)	2021.10.18.(월)	2021.10.22.(금)	2021.10.24.(일) ~ 2021.11.03.(수)	2021.12.06.(월) ~ 2021.12.11.(토)
방 법	인터넷 청약(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더스시티 견본주택</li> <li>※ 상기 기간은 당첨자만 해당되며, 서류제출 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li>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회신이 늦어질 경우 <b>상기 계약일정은 변경</b> 될 수 있습니다.</li> <li>※ 예비입주자는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참조</li> </ul>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더스시티 견본주택</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상구 본·지점 청약 가능 (09:00~16:00)</li> </ul>					
사전방문 예약기간 (홈페이지)	-	-			2021.10.22.(금) ~ 2021.11.03.(수)		2021.11.29.(월) ~ 2021.12.03.(토)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 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 시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거주지역, 해당첨 제한 여부, 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6항에 의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 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1) '20.09.30.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 (2) '20.09.30.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으로 청약 불가
-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해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대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산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 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제한은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됩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1,2순위)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일) 기준 : 5년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일) 기준 : 4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아래표와 같은 해당첨제한 규제를 받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제6호)</li> <li>•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 제3호)</li> </ul>	10년간(신설, '20.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제7호)</li> </ul>	7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임대주택(제1항 제5호)</li> <li>•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 제2항 제7호 가목)</li> </ul>	5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 제2호)</li> <li>•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 제4호)</li> <li>• 기타당첨자(제3조 제2항 제1·2·4·6·8호)</li> </ul>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 외	85이하	3년
		85초과	1년

※ 20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해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합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①, ② : 청약자 또는 세대원)	결과
부적격 예시	①, ② 부적격
당첨 [①] ⊕ 당첨 [②]	①, ② 부적격
당첨 [①] ⊕ 예비입주자 선정 [②]	① 부적격 / ② 예비입주자 추첨 불가
당첨 [①] ⊕ 낙첨 [②]	① 부적격 ※ 낙첨자의 청약신청 이력으로 당첨자 부적격 영향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양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별 입주자저축 및 자산·소득 요건**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60㎡이하	60㎡초과	60㎡이하	60㎡초과
입주자저축	필요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제외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6개월 6회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필요 (24개월 24회 이상)		필요	
자산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소득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세대주요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대전광역시 동구청 토지정보과)에 단독 신고**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조달(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포함) 및 입주 계획'**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주택취득 자금 조달(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포함) 및 입주계획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로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리더스시티' 4BL 지구주민 우선공급 계약자 및 계약자의 세대구성원은 **금번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제12호 내지 제14호 해당하는 경우와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의거 **기관추천 특별공급 거주 요건 명확화·거주요건 등 우선순위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령 제567호, 2018.12.19.> 부칙 제4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시행일 전 기존소유주택을 처분**하고,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 한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리더스시티.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위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공급유형별·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공급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이후에 관계법규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거나 공급대상에서 제외할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전광역시 조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규정 및 업무지침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1. 공급규모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3구역 4BL(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173 일대)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9층, 10개동, 1,328세대 중 지구주민 675세대를 제외한 (공공)일반분양 653세대

2. 공급대상(국민주택)

[단위 : m<sup>2</sup> / 세대]

주택 관리번호	주택형	타입	세대당 주택면적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율	공급 대상 세대수	특별공급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국가 유공자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2021000735-01	59.9400A	59A	59.9400	20.1019	80.0419	30.8415	110.8834	31.5965	212	11	21	21	63	53	11	180	32	9
2021000735-02	59.6400B	59B	59.6400	20.2473	79.8873	30.6871	110.5744	31.4384	56	3	6	6	17	14	3	49	7	2
2021000735-03	59.8400C	59C	59.8400	20.2604	80.1004	30.7900	110.8904	31.5438	140	7	14	14	42	35	7	119	21	5
2021000735-04	74.9600A	74A	74.9600	23.3149	98.2749	38.5699	136.8448	39.5141	84	4	8	8	25	21	4	70	14	10
2021000735-05	74.5200B	74B	74.5200	24.5202	99.0402	38.3435	137.3837	39.2821	83	4	8	8	25	21	4	70	13	9
2021000735-06	84.9500A	84A	84.9500	26.4653	111.4153	43.7101	155.1254	44.7802	49	2	5	5	14	12	2	40	9	9
2021000735-07	84.9600B	84B	84.9600	26.8174	111.7774	43.7152	155.4926	44.7854	29	1	3	3	9	7	1	24	5	5
합 계									653	32	65	65	195	163	32	552	101	49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습니다.(m<sup>2</sup>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sup>2</sup> X 0.3025 또는 m<sup>2</sup>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에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공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비율은 공동주택 총 대지비율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분양주택, 상호간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비율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이 포함된 라인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주택형	59.9400A	59.6400B	59.8400C	74.9600A	74.5200B	84.9500A	84.9600B
약식 표기	59A	59B	59C	74A	74B	84A	84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물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급금액

[단위 : 천원]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잔금	
					중도금							입주지정기간(30%)	용자금
					계약시 10%	22.03.21. 1차(10%)	22.07.20. 2차(10%)	22.11.21. 3차(10%)	23.03.20. 4차(10%)	23.08.21. 5차(10%)	24.01.22. 6차(10%)		
59A	212	1층	7	245,610	24,561	24,561	24,561	24,561	24,561	24,561	24,561	18,683	55,000
		2층	9	253,790	25,379	25,379	25,379	25,379	25,379	25,379	25,379	21,137	55,000
		3층	9	259,250	25,925	25,925	25,925	25,925	25,925	25,925	25,925	22,775	55,000
		4층	9	267,440	26,744	26,744	26,744	26,744	26,744	26,744	26,744	25,232	55,000
		5층 이상	178	272,900	27,290	27,290	27,290	27,290	27,290	27,290	27,290	26,870	55,000
59B	56	2층	2	248,250	24,825	24,825	24,825	24,825	24,825	24,825	24,825	19,475	55,000
		3층	2	253,590	25,359	25,359	25,359	25,359	25,359	25,359	25,359	21,077	55,000
		4층	2	261,600	26,160	26,160	26,160	26,160	26,160	26,160	26,160	23,480	55,000
		5층 이상	50	266,940	26,694	26,694	26,694	26,694	26,694	26,694	26,694	25,082	55,000
59C	140	1층	1	240,880	24,088	24,088	24,088	24,088	24,088	24,088	24,088	17,264	55,000
		2층	5	248,910	24,891	24,891	24,891	24,891	24,891	24,891	24,891	19,673	55,000
		3층	5	254,260	25,426	25,426	25,426	25,426	25,426	25,426	25,426	21,278	55,000
		4층	5	262,290	26,229	26,229	26,229	26,229	26,229	26,229	26,229	23,687	55,000
		5층 이상	124	267,650	26,765	26,765	26,765	26,765	26,765	26,765	26,765	25,295	55,000
74A	84	1층	4	299,470	29,947	29,947	29,947	29,947	29,947	29,947	29,947	14,841	75,000
		2층	8	309,450	30,945	30,945	30,945	30,945	30,945	30,945	30,945	17,835	75,000
		3층	10	316,110	31,611	31,611	31,611	31,611	31,611	31,611	31,611	19,833	75,000
		4층	10	326,090	32,609	32,609	32,609	32,609	32,609	32,609	32,609	22,827	75,000
		5층 이상	52	332,750	33,275	33,275	33,275	33,275	33,275	33,275	33,275	24,825	75,000
74B	83	1층	2	295,740	29,574	29,574	29,574	29,574	29,574	29,574	29,574	13,722	75,000
		2층	7	305,590	30,559	30,559	30,559	30,559	30,559	30,559	30,559	16,677	75,000
		3층	9	312,170	31,217	31,217	31,217	31,217	31,217	31,217	31,217	18,651	75,000
		4층	9	322,020	32,202	32,202	32,202	32,202	32,202	32,202	32,202	21,606	75,000
		5층 이상	56	328,600	32,860	32,860	32,860	32,860	32,860	32,860	32,860	23,580	75,000
84A	49	1층	4	339,510	33,951	33,951	33,951	33,951	33,951	33,951	33,951	101,853	-
		2층	7	350,830	35,083	35,083	35,083	35,083	35,083	35,083	35,083	105,249	-
		3층	9	358,370	35,837	35,837	35,837	35,837	35,837	35,837	35,837	107,511	-
		4층	9	369,690	36,969	36,969	36,969	36,969	36,969	36,969	36,969	110,907	-
		5층 이상	20	377,240	37,724	37,724	37,724	37,724	37,724	37,724	37,724	113,172	-
84B	29	1층	3	333,770	33,377	33,377	33,377	33,377	33,377	33,377	33,377	100,131	-
		2층	4	344,890	34,489	34,489	34,489	34,489	34,489	34,489	34,489	103,467	-
		3층	5	352,310	35,231	35,231	35,231	35,231	35,231	35,231	35,231	105,693	-
		4층	5	363,440	36,344	36,344	36,344	36,344	36,344	36,344	36,344	109,032	-
		5층 이상	12	370,860	37,086	37,086	37,086	37,086	37,086	37,086	37,086	111,258	-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59㎡ 세대당 55,000천원, 전용 74㎡ 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용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 수분양자는 입주 시 용자금(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차용인 명의를 수분양자의 명의로 변경하거나 용자금 전액을 용자금상환계좌에 일시 납부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 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상환일(대환일)까지 발생한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용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미납한 금액에 대한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 59C타입 중 401동 106호는 전용면적이 동일한 형태로 계획되나, 설계개요 산출 상 오차보정으로 인해 세대별 대지비분과 대지비가 일부 상이합니다. 또한 401동 106호는 59C타입의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이므로 청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 사항**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 사항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비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등기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
- 매수자는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매수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인색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계약 및 전매시 필요한 인지세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우리은행	당첨자 발표 이후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

-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계좌의 경우 상기 계좌와 상이하거나 가상계좌로 관리될 수 있으며, 가상계좌의 경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멸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내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예시 : 101동1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 기재)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주예정일 : 2024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 포함)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수령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한 경우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에서 최초 통지한 입주지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는 할인 및 연체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은 선납할인에서 제외되며 선납한 금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연체이율 : 연 5.92%
- 실 입주일일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불출)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잔금 납부 일을 말한다)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관리비, 전기가스 등 제세공과금과 관계 법령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통보 예정 입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7.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8.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경비실, 커뮤니티시설(다목적실, 공방, 독서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맘스스테이션, 바이크스테이션 등)

II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1.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 플러스옵션은 발코니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기간 내 신청 : 21.12.06.(월) ~ 21.12.11.(토) 6일간]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가격	계약금(10%)	잔금(90%)
		계	계약시	입주지정일
59.9400A	59A	6,400,000	640,000	5,760,000
59.6400B	59B	7,000,000	700,000	6,300,000
59.8400C	59C	8,500,000	850,000	7,650,000
74.9600A	74A	7,700,000	770,000	6,930,000
74.5200B	74B	6,900,000	690,000	6,210,000
84.9500A	84A	8,600,000	860,000	7,740,000
84.9600B	84B	7,500,000	750,000	6,750,000

■ 플러스 옵션 금액 [계약기간 내 신청 : 21.12.06.(월) ~ 21.12.11.(토) 6일간]

구분	품목	약식표기	제조사	모델명(제품번호)	설치위치	공급가격	계약금(10%)	잔금(90%)
						계	계약시	입주지정일
1	3연동 중문	전타입	유니퍼		현관	1,100,000	110,000	990,000
2	공기청정시스템	전타입	하츠	EAS-530R	현관(에어샤워기)	700,000	70,000	630,000
3	인덕션	전타입	쿠첸	CIR-B31H	주방	500,000	50,000	450,000
4	오븐	전타입	LG	MZ385EBT	주방	400,000	40,000	360,000
5	주방벽체 (엔지니어드 스톤)	59A	KCC		주방	760,000	76,000	684,000
		59B/59C				520,000	52,000	468,000
		74A				820,000	82,000	738,000
		74B				690,000	69,000	621,000
		84A				820,000	82,000	738,000
		84B				870,000	87,000	783,000
6	빌트인냉장고, 김치냉장고	59A (글라스)	LG	양문형냉장고 : BC4S1AA1 김치냉장고 : BV3K1AA1	주방	5,800,000	580,000	5,220,000
		59B/59C (글라스)		양문형냉장고 : BC4S1AA1 (김치냉장고 제외)		3,400,000	340,000	3,060,000
		74A/74B/84A/84B (메탈)		양문형냉장고 : BC4S1AA1 김치냉장고 : BC3K1AA1		6,800,000	680,000	6,120,000
7	주방수납강화	74A		장식장+복도판넬	주방	1,900,000	190,000	1,710,000
		74B		키큰장		1,000,000	100,000	900,000
		84A		포켓도어+펜트리+복도판넬		1,700,000	170,000	1,530,000
		84B		키큰장		1,200,000	120,000	1,080,000
8	스마트 복합환풍기	전타입	힘펠	FHD-P150S1	공용욕실	350,000	35,000	315,000
					부부욕실	350,000	35,000	315,000
9	시스템에어컨	59A/59B/59C	LG	기본	2개소(거실/주방, 침실1)	3,400,000	340,000	3,060,000
				전실	4개소(거실/주방, 침실1,2,3)	5,300,000	530,000	4,770,000
		74A/74B		기본	3개소(거실, 주방, 침실1)	4,500,000	450,000	4,050,000
				전실	5개소(거실, 주방, 침실1,2,3)	6,500,000	650,000	5,850,000
		84A		기본	3개소(거실, 주방, 침실1)	4,500,000	450,000	4,050,000
				전실	6개소(거실, 주방, 침실1,2,3,4)	7,700,000	770,000	6,930,000
				기본	3개소(거실, 주방, 침실1)	4,500,000	450,000	4,050,000
				전실	5개소(거실, 주방, 침실1,2,3)	6,500,000	650,000	5,850,000
10	미세먼지 안전 복합창	59A	원가드	안전	거실, 주방 (미세망 적용)	2,500,000	250,000	2,250,000
		59B				2,300,000	230,000	2,070,000
		59C				2,500,000	250,000	2,250,000
		74A				3,300,000	330,000	2,970,000
		74B				3,100,000	310,000	2,790,000
		84A				3,600,000	360,000	3,240,000
		84B				3,300,000	330,000	2,970,000
		11				거실/주방 바닥타일	59A	세종통상
59B/59C	600,000		60,000	540,000				
74A	830,000		83,000	747,000				
74B	870,000		87,000	783,000				
84A	1,200,000		120,000	1,080,000				
84B	1,140,000		114,000	1,026,000				
12	세대 환기시스템	전타입	경동나비엔	TAC521	다용도실	1,200,000	120,000	1,080,000
13	전자비데	전타입	에코빌휴	EH-315	공용욕실	180,000	18,000	162,000
14	무기질도료	59A/59B/59C	SEF		침실1, 침실2, 침실3, 드레스룸	2,400,000	240,000	2,160,000
		74A			침실1, 침실2, 침실3, 드레스룸	2,600,000	260,000	2,340,000
		74B			침실1, 침실2, 침실3, 드레스룸	2,500,000	250,000	2,250,000
		84A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4, 드레스룸	3,200,000	320,000	2,880,000
		84B			침실1, 침실2, 침실3, 드레스룸	2,800,000	280,000	2,520,000

## 2.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확장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칸막이 제거 및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세시는 이중창으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 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 제기불가)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출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므로,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출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침실1 이중창),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오수 배관노출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 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플러스 옵션 관련 내용

- 폴딩싱 타일 또는 포슬레인 타일 시공은 타입별로 상이하며 거실+주방+복도이며, 미선택시 침실과 동일한 강마루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기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부가세 포함)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본 설치 품목인 에어컨냉매 매립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미설치 시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유상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동 시 발생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해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은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벽체 엔지니어드스톤 옵션 선택 시 벽체 타일시공에서 엔지니어드스톤으로 변경 시공되며, 자재 특성에 따라 벽체 및 상판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벽체 엔지니어드스톤 옵션 선택 시 벽체 시공에 따른 자재 이음부위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이색 및 단 차이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안전복합창 옵션 선택 시 안전기능이 추가된 방충망이 시공되며, 거실 및 주방에는 미세먼지 기능이 추가된 복합창이 설치됩니다.
- 세대현관 공기청정시스템의 옵션 선택 시 신발장 내부에 필터가 설치되며, 주기적인 필터 교체 등은 입주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필터교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무기질 도로 시공 옵션 선택 시 각 세대별 침실 및 드레스룸에 시공되므로 최종 마감재 시공전 무기질도포를 시행되므로 육안상 확인 어려우며, 최종 마감재 등을 철거 후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세대환기시스템 옵션 선택 시 기기내부에 필터가 설치되며, 주기적인 필터 교체 등은 입주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필터교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빌트인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는 각 타입별 지정된 색상만 선택가능하며, 59B/C 타입의 경우 김치냉장고는 주방발코니에 위치함으로 냉장고만 옵션선택 가능합니다.
- 수납강화형 옵션 선택시 각 타입별 금액 및 시공범위가 다르므로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을 계약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문 옵션 선택시 각 타입별 색상 및 마감재 사양등 이 다르므로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을 계약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74A타입 주방수납강화형 옵션 선택시 팬트리 옆 주방공간에 장식장 및 복도판넬 일부마감이 시공되며, 미선택시 장식장 및 복도판넬 마감은 제외되며 벽지 시공됩니다.
- 74B타입 주방수납강화형 옵션 선택시 아일랜드에 키큰장이 시공되며, 미선택시 키큰장 미설치 및 벽지가 시공되므로 견본주택 미건립세대로 추후 계약시 홍보자료 및 도서 확인등을 통해 충분히 옵션가구 형태 및 사양등을 인지하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4A타입 주방수납강화형 옵션 선택시 침실4에 포켓도어, 복도 팬트리 및 복도판넬 일부마감이 시공되며, 미선택시 침실4 목재도어, 팬트리 및 복도판넬 마감은 제외되며 벽지 시공됩니다.
- 84B타입 주방수납강화형 옵션 선택시 아일랜드에 키큰장이 시공되며, 미선택시 키큰장 미설치 및 벽지가 시공되므로 견본주택 미건립세대로 추후 계약시 홍보자료 및 도서 확인등을 통해 충분히 옵션가구 형태 및 사양등을 인지하기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또는 자재발주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 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상가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4.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 발코니 확장 금액

구분	납부시기	금액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계약 시	공급 금액의 10%	우리은행	당첨자 발표 이후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잔금	입주 시	공급 금액의 90%			

##### ■ 플러스 옵션 금액

구분	납부시기	금액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계약 시	공급 금액의 10%	추후안내	당첨자 발표 이후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추후 안내
잔금	입주 시	공급 금액의 90%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플러스옵션 납부계좌는 각각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예시 : 101동1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 기재)바랍니다.

■ 상가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선택,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구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목재공들, 확장형 발코니출입문(PD), 디지털도어록	옥실문틀 하부 쉘,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PL창호, 대피공간 창호
② 바닥	강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물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마루귀틀)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물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MDF판, 폴리싱타일, 무늬목시트 등),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경량콘크리트판넬(세대칸막이벽), 발코니 벽도장(수성페인트)
④ 천장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동림	경량천장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장, 커튼박스, 발코니천장 도장,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⑤ 욕실	천정재(천정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액세서리류, 수전류(발코니 수전 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 욕실팬,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젠다이 상부 엔지니어드스톤	시멘트 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등),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센서형절수기 포함), 주방벽 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⑧ 일반가구	신발장, 드레스룸가구, 화장대, 반침가구, 김치냉장고장	-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명시되지 않는 기본선택 품목 등은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합니다.

<b>마이너스 옵션 = [ 기본분양가 (-) 마이너스 옵션 ]</b>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원 / 부가가치세포함)</span>							
<b>주택형(약식표기)</b>	<b>59A</b>	<b>59B</b>	<b>59C</b>	<b>74A</b>	<b>74B</b>	<b>84A</b>	<b>84B</b>
금 액	21,239,000	21,198,000	21,254,000	25,354,000	25,552,000	28,745,000	28,838,000

<b>마이너스 옵션 시 발코니 확장 = [ 기본분양가 (-) 마이너스 옵션 (+) 마이너스 옵션 시 발코니 확장]</b> <span style="float: right;">(단위 : 원 / 부가가치세포함)</span>							
<b>주택형(약식표기)</b>	<b>59A</b>	<b>59B</b>	<b>59C</b>	<b>74A</b>	<b>74B</b>	<b>84A</b>	<b>84B</b>
금 액	4,091,000	5,606,000	7,023,000	5,209,000	5,530,000	6,502,000	5,177,000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기간에만 선택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하며,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자재수급 사정,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을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 작업시 관리사무소 등에 사전 신고하여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이웃 세대 민원이 우려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사 시공분 시설은 적절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이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 시 기본 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 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을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사업주체에서 시공한 소방 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 계약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대금 납부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마이너스 옵션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감소분을 분양대금 납부 비율에 안분하여 차감 적용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에너지 절약기준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 (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III

##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 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 1. 공급구분별 지역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금회 공급되는 '리더스시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25조에 의거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1년 이상(20.09.30. 이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해당 지역거주자의 미달물량은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 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다자녀가구·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 공급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 대전시 1년 이상 거주자	100%	•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0.09.30. 이전부터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거주(20.09.30.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기타지역(충청남도, 세종시) ※ 대전시 1년 미만 거주자, 세종시, 충청남도 거주자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분 •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1년 미만(20.10.01. 이후) 거주자 포함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 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1) '20.09.30.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 (2) '20.09.30.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 대전광역시 해당주택건설 지역 거주기간 산정 시 대전광역시 내 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 해당지역인 대전광역시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대전광역시 1년 미만,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 중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전입제한일(대전광역시 우선공급 거주요건 : 1년)이 적용된 지역은 기타 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 2.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 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21.10.22)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 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준(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기관추천(국가유공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5조) 포함)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 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 이어야함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 및 분양권 등]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 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 할 것

####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 되어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 등을 매개로 승계 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 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 : 처리일
  - 분양권 등의 공급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관계 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본 사업자는 공공분양 주택으로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9호의 소형·저가 주택 등을 소유하였을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유주택자)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 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 이하 주택 및 분양권 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청약 미달되어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및 60㎡이하 1순위 일반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2페이지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
- 자산보유기준 적용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되며, 보유자산의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9.30)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60㎡이하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 및 향후 청약하러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를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 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규모의주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 관련 자료는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 주체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 + 토지)	215,500천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의 종류</th> <th>지방 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건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r> <td colspan="2">시설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의 종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의 종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자·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 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건축물 가액에 토지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 토지도 토지 가액에 포함(개별 공시지가 기준)</li> </ul>																
자동차	34,960천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li> <li>-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등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li> <li>「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li> </ul>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 라 인 조 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 연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에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1년식 자동차를 2020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 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 4. 소득 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및 60㎡이하 1순위 일반공급 신청자

■ 소득 기준 적용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4> 조희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며, 보유자산의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9.30.)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전용 60㎡이하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소득 기준은 아래 “6. 일반공급” 별도 고지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단위 : 원]

공급유형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생애 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일반공급(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신혼 부부	우선공급 (7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일반공급 (30%)	배우자소득 無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배우자소득 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442,224	9,931,887	9,931,887	10,351,106	10,889,232	11,427,359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8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84,376원,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 기준) 추가

· **가구원 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기준
신혼부부 · 다자녀 특별공급 일반공급(60㎡ 이하)	2페이지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 ※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 수로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2페이지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 ※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 수로 산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b>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b> 를 포함하여 산정. ※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 수로 산정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신혼부부 · 다자녀 · 노부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60㎡ 이하)	위 가구원 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b>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b>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 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를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http://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 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4>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 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 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 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 퇴직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국방부 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 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 근로소득 자료 반영순위 (①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 해야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 소득이 200만 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 소득이 190만 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표4>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를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험처 등

## IV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으로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된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 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필요 없음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우수기능인, 남북피해자, 대한민국체육공공자, 공무원, 우수선수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장애인(대전시·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세종시 노인장애인과), 국가유공자·장기복무제대군인(대전지방보훈지청 복지과),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의사상자(대전시·세종시 복지정책과 / 충청남도청 사회복지과), 다문화가족(대전시 가족돌봄과, 세종시 여성가족과, 충청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중소기업근로자(대전세종 지방중소기업청), 우수기능인(글로벌속련기술진흥원), 남북피해자(통일부 이산가족과), 대한민국체육공공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공무원(공무원 연금공단 주택사업실), 우수선수(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은 1년, 수도권외는 6개월, 위촉지역은 3개월로 함)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 되어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1.10.13.)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를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1회 이상 공급 가능)

####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층별·타입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2002.10.01.~2021.09.30.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 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혼으로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혼, 재혼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 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점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점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점일로부터 1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는 6개월, 위촉지역은 3개월로 함))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 중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전일제하일(대전광역시 우선공급 거주요건 : 1년)이 적용된 지역은 기타 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점자 선정방법

- 주택형태 경쟁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는 ① (주민등록표등본 상)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 시 되며 ②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간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배점 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점자를 선정합니다.
- 해당 지역인 대전광역시에 배정된 물량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경쟁이 있었던 기타지역(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낙점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배점 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점자를 선정합니다.
- 당점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점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층별·타입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점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점되면 일반공급 당점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점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및 예비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공급신청자가 대전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무주택 기간(4)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산정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5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 무주택기간 : 3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을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6조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수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 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 분리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 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 유의사항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는 6개월, 위촉지역은 3개월로 함))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 중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전일제한일(대전광역시 우선공급 거주요건 : 1년)이 적용된 지역은 기타 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형태 경쟁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는 ① (주민등록표등본 상)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 시 되며 ②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간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해당 지역인 대전광역시에 배정된 물량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경쟁이 있었던 기타지역(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층별·타입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 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및 예비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생애최초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⑥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인 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 원]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	----	-------	----	----	----	----	----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청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은 1년, 수도권외는 6개월, 위촉지역은 3개월로 함))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중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전입제한일(대전광역시 우선공급 거주요건 : 1년)이 적용된 지역은 기타 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에게 일반공급 합니다.
-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행방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우선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 거주 지역(공고일 현재 대전시 1년 이상 거주 자 → 그 외 대전 1년 미만, 세종시, 충청남도 지역 거주자) → ②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3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소수점이하는 올림)에 대하여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① 거주 지역(공고일 현재 대전시 1년 이상 거주 자 → 그 외 대전 1년 미만, 세종시, 충청남도 지역 거주자) → ②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태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및 예비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을 포함하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 ※ (예비신혼부부)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 주체로 제출해야 하며, 미 증명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 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하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태아의 경우 임신증명서류 등을 통해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단,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 원]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9,333,628	9,794,879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10,111,430	10,611,119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442,224	9,931,887	9,931,887	10,351,106	10,889,232	11,427,359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소유, 자산 및 소득 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해당청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은 1년, 수도권외는 6개월, 위촉지역은 3개월로 함))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 중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전입제한일(대전광역시 우선공급 거주요건 : 1년)이 적용된 지역은 기타 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30% 및 우선공급 잔여물량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에게 일반공급 합니다.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 지역(공고일 현재 대전시 1년 이상 거주 자 → 그 외 대전 1년 미만, 세종시, 충청남도 지역 거주자) → ②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이하인 자)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소수점이하는 올림)에 대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거주 지역(공고일 현재 대전시 1년 이상 거주 자 → 그 외 대전 1년 미만, 세종시, 충청남도 지역 거주자) → ②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2019.09.30.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항 목		기 준	비 고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인 경우 : 1점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대전광역시)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 1점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 0점.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마.	혼인 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은 선택 불가
	자녀의 나이 (한부모 가족에 한함)	2세 이하(만3세 미만) :3점 2세 초과 4세 이하(만5세 미만)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만7세 미만) : 1점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 :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4,824,128	5,675,364	5,675,364	5,914,918	6,222,418	6,529,919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 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 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 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함)를 입력하고, 한부모 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예비)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허위임신·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태아수만큼 산정)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다. 혼인 기간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층별·타입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 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및 예비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서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 요건을 구비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세대주 1인만 가능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 원]

전용면적 60㎡이하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7,778,023	8,162,399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청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은 1년, 수도권외는 6개월, 위촉지역은 3개월로 함)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입주지정 기간 초일)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 중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전입제한일(대전광역시 우선공급 거주요건 : 1년)이 적용된 지역은 기타 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경쟁 시 ① 순위(1순위→2순위), ② 거주지역(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 → 그 외 대전 1년 미만, 세종시, 충청남도 지역 거주자) → ③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동별·층별·향별·속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해당지역(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와 그 외 지역(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을 구분하여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 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입주자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이신 분 - 본인 또는 세대 구성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모든 지역, 모든 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분
2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 당 사 항
<p>-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로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 여부는 "Ⅲ. 신청기준의"2.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참조)</p> <p>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5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1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 32세 미혼(만 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 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p> <p>※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p>

**V 신청서 확인사항**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점사실 조회 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신청자 본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로그인 → 조회기준일 입력('21.10.22. 또는 해당제한한 기준일은 당점자 발표일인 '21.10.22.) → 검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해당제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제한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점되어 해당제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점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점일로부터 1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은 1년, 수도권외는 6개월, 위촉지역은 3개월로 함)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로그인을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점 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점 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매금지, 해당제한, 입주 의무 및 거주 의무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해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21.10.22.)**로부터 **일반공급 주택은 4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되며, 특별공급(기관추천, 신혼부부 등)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5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됩니다.**  
 ※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점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점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점자 본인은 물론 당점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점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 경과 후 분양제한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법」제64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본 주택의 소유권을 **전매제한기간 내에는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6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3.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인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점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만 65세 이상인 분</b> ②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b>장애인등록증</b> 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b> 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 일자에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점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인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 ② 자격인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4.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및 예비입주자 자격 또한 무효 처리됩니다.  
[계약체결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선정에서 제외(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예비 포함)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 외 예비 배우자가 다른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기관추천(국가유공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5조) 포함)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5.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공통 적용사항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사업주체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 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사업주체 홈페이지(<http://www.리더스시티.com>)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 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 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행 및 의견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 배정일(당첨발표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리더스시티 견본주택(사이버견본주택) 방문 또는 유선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추첨에 불참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에도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이 적용됩니다.**
- 정부 시책으로 예비입주자 비율이 상향 조정(투기과열지구 내 40%에서 50%로 상향조정)되어 증가된 예비입주자로 인하여 사전서류접수 기간이 매우 혼잡할 수 있으며, 또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사업주체 홈페이지(<http://www.리더스시티.com>)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6조의 2를 준용합니다.

#####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당첨자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5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합니다.

## VI

### 신청일정·장소·방법, 유의사항

####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	------	------	------

특별 공급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b>2021.10.13(수)</b> (청약 Home : 08:00 ~ 17:30)	인터넷 청약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 Home" 검색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은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현장접수 가능 ※ 접수시간 : 10:00 ~ 14:00 ※ 견본주택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32
일반 공급	· 1순위	<b>2021.10.14(목) - 해당지역</b> <b>2021.10.15(금) - 기타지역</b> (청약 Home : 08:00 ~ 17:30)	인터넷 청약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 Home" 검색 · 은행창구(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 2순위	<b>2021.10.18(월)</b> (청약 Home : 08:00 ~ 17:30)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 Home([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 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 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신청 시 유의사항

-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으로 동·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태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일별 접수 시간이 지나면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태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모든 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보 취약계층 등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분(특별공급신청자에 한함)만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표6>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와 동일)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하여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 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 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태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 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 3. 신청 방법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 Home"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신청(기관추천(국가유공자 포함),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30.)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대전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과거 1년 미만으로 대전광역시에 거주한 경우와 그 외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를 소지하고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인증서는 은행 또는 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증권용 공동인증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 신청시간 : 08:00 ~ 17:30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신청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 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 특별공급 방문접수 (견본주택, 10:00~14:00) : **고령자·장애인·인터넷 취약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표6>의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목록상의 필요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은행 창구 접수 불가)
    - ※ 일반공급 방문접수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09:00~16:00) : **고령자·장애인·인터넷 취약자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청약접수를 할 수**

있으며, 아래의 구비사항을 모두 구비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건본주택 접수 불가)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일반공급 접수(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방문접수)시 구비사항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li>·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li> <li>· 주민등록표등본 1통</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신청 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및 대리신청 시 준비서류 등 위 표의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이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하며,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고, 당첨자에 한하여 청약자격은 사업 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청약자격이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여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 후 신청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 청약접수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VII

당첨자(예비입주자)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등

1. 당첨자(예비입주자)발표

■ 일정 및 장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계약체결(당첨자)	서류제출(예비입주자)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일정
2021.10.22(금)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2021.10.24(일)~11.03(수) 10:00~17:00	2021.12.06(월)~12.11(토) 10:00~17:00	사업주체 홈페이지 고지 (http://www.리더스시티.com)	사업주체 홈페이지 고지 (http://www.리더스시티.com)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2 리더스시티 건본주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보유자산 및 소득에 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상기 계약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사업주체 홈페이지(http://www.리더스시티.com)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 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 기간	2021.10.22(금) ~ 2021.11.01(월)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 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10.22(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 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 특별공급(기관추천·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등·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 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소유 여부, 과거 당첨 사실 여부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당첨자 및 등·호수 배정 발표 후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 2.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간 (예비입주자 : 추후 사업주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 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을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당 공급계약 및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포함하며, 전자수입인지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납부함)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필수	추가 (해당자)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①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본인 및 세대구성원	※ <b>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b> 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 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③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⑥ 재직증명서(상세)	본인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b> 한 경우



○	⑦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30.)로 발급, <b>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발급</b>

<표6> 특별공급(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공통서류	○		① 주민등록표 등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 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본인 및 세대 구성원	※ <b>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b>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 만 14세 이상의 세대 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본인	※ 반드시 인정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구성명/관계 등을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③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배우자 및 세대 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⑤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⑥ 재직증명서(상세)	본인	·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b>
		○	⑦ 임신증명서류(상세)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소득산정 시 가구원 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⑧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또는 배우자)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30.)로 발급 <b>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발급</b> · <b>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b>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으려는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의 존비속을 배정에 산정한 경우
		○	③ 한부모가족증명서(상세)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정(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 받으려는 경우
		○	④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⑤ 임신 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으려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견본주택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상세'로 발급
		○	②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확인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④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피부양 직계존속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 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자
		○	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30.)로 발급 <b>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발급</b>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비) 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③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예비)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예비) 배우자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건본주택 비차)
	○	⑥ 임신 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건본주택 비차)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②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④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7> 참고)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7>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표7>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인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1년 이내(전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1년 이내(전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 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①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무통장 입금증) ※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대금, 추가선택품목 계좌가 모두 다르며, 계약금 확인 후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수입인지 ※ 기재금액 1억 초과 10억 이하 : 15만원(1금융권 및 우체국 발행 가능)	
	③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④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공고일 이후 본인 발급분에 한함) 단, 서명날인 시 본인만 계약가능	
	⑤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리더시티 홈페이지(http://www.리더시티.com) 게시 예정] 및 증빙자료 ※ 자격 검증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요청한 서류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방식	본인서명확인서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 서명 날인 시 본인만 계약 가능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위임용)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셔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VIII

###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사이버 건본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 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 사실, 소득자산 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사입 추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를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유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접수 시 기재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유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천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중 주택가격(발코니 확장금액 및 옵션금액 등 포함)의 10%를 공제합니다.
  - ※ 다만, 중도금을 일부라도 납부한 후에는 사업주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 공부정리가 입주자 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기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예정일을 고려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 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모집 및 입주 계획(증빙자료 포함)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자금모집 및 입주 계획서(증빙자료 포함)**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로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 조건(대출이자 계약자 부담)**으로 대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 **중도금 5회차(10%) 및 6회차(10%)는 계약자 개별납부(자납)로 진행할 예정**이며, 그 외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 개인의 신용불량 등 중도금 금융대출이 불가한 경우나 개인사정으로 대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융기관 선정 불가할 경우 본인 자금으로 직접 해당 납기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체이율(연형 5.92% 변동 가능)이 가산**됩니다.
  - ※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격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주체 건보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가능하나, 정부의 관련정책,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한도축소 등의 사유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고, **계약자 자기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 및 대출취급상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 제한 등)** 등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약 접수 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대출취급상품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대출에 필요한 중도금보통수수료, 인지도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중도금보증서의 발급가능 여부에 따라 **대출일선조건이 변경 또는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 대출보증조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에 의해 입주시점의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상환조건 등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사업주체는 대출기관과 협약 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대출일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진행에 따라 **모집공고에 기재된 날짜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 분양계약해지 요구, 중도금 대출 신청 거부, 발코니확장비, 추가선택목욕대금 납부 거부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중도금 대출 신청 및 기표 일정이 공급대금의 각 납부회차 이후일지라도 이전 회차의 공급대금까지 함께 기표하여야 합니다.
  - ※ 대출은행과의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정보제공 미동시에 따른 대출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에 책임지지 않음)
  - ※ 대출일선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서류의 미제출시 사업주체는 대출을 알선 하지 않습니다.
  -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미이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대출 알선이 불가하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병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 가입하거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3. 지구 및 단지여건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자 및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광고홍보물품은 실제 설계의 사실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으니, 반드시 정확한 설계사항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지구 여건

- 본 지구의 남동측으로 천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 본 지구의 북측으로 경부선 철도가 위치하며, 방음벽이 설치되어있으나 철도 운행에 따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북서측으로 효동1지하차도, 동측으로 천동지하차도가 인접해 있습니다.
- 본 사업지 서측으로는 준주거용지가 위치 할 예정이며, 남측으로는 공공청사, 주차장, 준주거용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본 사업지 동측에는 38M 서측으로 37M 남측으로는 31M 기준도로가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주차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외부여건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외부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의 조성은 정비계획, 사업시행인가, 교통영향평가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상위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준공시점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외부의 도로, 공원 녹지 등에 설치되는 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은 개별 건축설계보다 우선하는 필수 기반시설로 정비계획, 사업시행인가 등 상위계획변경에 의거 위치, 재질,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나, 기타 사유로는 변경이 불가함을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바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 409동, 410동 동측에 소공원 1개소 및 천동초등학교가 위치하여 이용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408동 남측에는 공공청사 신축이 계획되어 있어 공공청사 건축공사 및 이용에 따른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 외부의 단지모형, 조감도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차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폭, 단지와의 단차, 단지내 도로선형 및 기울기,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완충 녹지, 단지 주/부 출입구 도로 확폭 구간),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건축옹벽, 토목옹벽, 자연석 쌓기 등)의 형태, 공법,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수반 될 수 있으며, 인허가나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동에는 단지 내외간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경사면 처리 공법에 따라 옹벽, 석축, 자연 경사 처리 구간 등이 설치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높이, 재질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 보차도와 단지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모형/CG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옹벽의 높이, 재질 등은 분양 시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면한 인접대지(도로, 완충녹지, 공원 등) 레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계부의 옹벽/사면/자연석 및 계단/램프의 종류, 노출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외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압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도시가스사업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 외부에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 외부에 통신관련 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통신사업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대전전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시계획도로, 소공원, 녹지, 등의 공사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차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부 여건

- 근린생활시설 4개소 설치는 상위계획인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라 연도형 상가 권장구간으로 설치하였으므로 이에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분양주택(1,328세대)과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전기실/발전기실, 기계실/저수조, 우수저류조, 단지출입구 등의 시설물을 공유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중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주택법 등 법령이 정하는 오차범위 내에서의 증감 차이는 정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배차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 외도로 (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조경, 소음 및 매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단지 내 보행자로 인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아파트 주출입구는 단지배치 및 단지 내 고저차로 인하여 출입개소와 방향 및 형태(보도 경사로 포함)는 동별로 상이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위 (E/V 홀, 계단실 등)의 평면형태 및 마감, 이동 동선 등은 동별 라인별로 상이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지상주차장계획은 중앙광장,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설치로 주차분배가 동별로 분배가 어려우며, 상호 공유하는 시설물로 계획하였습니다.
- 단지 지상주차장 배치로 인하여 차량 소음 및 진동, 차량 라이트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 승하차 동선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충분히 모형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01동 1층 부분에 어린이놀이터 및 필로티, 헬름 배기구 돌출구조물, 지하주차장 2층에 전기실(발전기실 포함)설치로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니 모형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02동 전면에 지상주차장 설치(보도 근접 등), 인근에는 쓰레기 분리수거함, 주민 운동시설 등 저층세대 사생활 침해 및 소음등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히 모형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03동, 404동 전면에 지상주차장설치(보도 근접 등),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저층세대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냄새 등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레벨 차이로 인하여 보도 일부 부분에 계단설치로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4개소 설치는 상위계획인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라 연도형 상가 권장구간으로 설치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05동 지하부분에 주민공동시설-3, 부분 방음벽 설치, 인근으로 지상배기 돌출 구조물, 옥외 계단 및 보도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일부는 소음 또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모형등 충분히 계약전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06동 1층 부분에 경로당 관리사무소 설치, 우측으로 어린이집이 계획되었으며, 지하층 진입거리가 타동에 비해 일부 다소 긴 구간이 생길 수 있으며, 지상배기 돌출 구조물과 인접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형등 충분히 계약전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07동 인근으로 어린이 놀이터 작은 도서관 지상주차장, 지상배기 돌출 구조물이 설치되어 소음 및 사생활 침해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형 등 충분히 계약전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08동 지하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며, 인근으로 대지내공지, 쓰레기 분리수거함, 지상배기 돌출물이 설치되어 냄새, 소음 및 사생활 침해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형 등 충분히 계약전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09동 부출입구 인접으로 차량의 소음, 문주 구조물, 근린생활시설, 쓰레기 분리수거함, 대지 내 공지 위치로 인하여 저층세대 냄새, 소음 및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형 등 충분히 계약전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10동 전면에 지상주차장설치(보도 근접등), 쓰레기 분리수거함 배기돌출 구조물 설치, 문주 구조물 저층세대,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레벨차이로 인하여 보도 일부 부분에 계단설치로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충분히 계약전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01동 전면에는 근린생활시설-4, 408동 지하 일부 근린생활시설-1, 408동 전면에 근린생활시설-2, 409동, 410동 인근에는 근린생활시설-3 계획되어있어, 이로인한 사생활 침해 및 생활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앙 광장주위로는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4, 지하1층에 피트니스센터를 포함한 주민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인한 사생활 침해 및 생활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은 단지계획상 외부도로에서 내부도로를 거쳐 지하주차장 및 지상주차장으로 진출입하거나 외부에서 직접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토록 설계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내 이동은 내부램프로 연결되어 있음. 지상(상가용) 및 지하주차장 사용에 대하여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대수는 총 1,687대 (상가 : 21대 별도)로 공동 주차장으로 동별 분배가 아니며, 전기자동차 (18대)구획 부분은 충전시에만 사용하는 구획으로 전체 주차대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 공간은 일부 동에 분산배치되며, 그에 따라 각동별 이동 동선 및 개소가 차이가 발생하므로 계약 전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주차위치 및 방향은 단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은 안전과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출입구 및 외벽 기단부는 석재 또는 석재뿔칠 (석재질감의 도료)로 시공되나 면적은 동별로 상이하며, 색채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한 동은 일부 보행자 동선과 중첩될 수 있으며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작은도서관, 어린이집, 피트니스클럽, 주민공동시설 등)에는 내부시설물 (가구 및 인테리어, 운동기구 및 도서 등)이 일부 설치되며(분양CG참조),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설비 발전기실에 인접한 동(401동 인근)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통제시스템은 주 부출입구에 설치되며, 무인택배시스템은 지하주차장1층 각 동별로 설치되며, 공사시 위치 및 개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은 주 부출입구에 인접하여 3개소 설치됩니다.
- 1층 필로티 내부에 제연헬륨 DA가 설치되어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발생할 수 있어 통행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출입구 진입부분에 주민공동시설-5 상부에 발전기실 급배기탑이 설치되어 있어 미관 및 생활에 있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401동, 402동, 403동, 404동, 405동, 406동, 407동, 408동, 409동, 410동 옥상에는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상세위치 및 집열판의 규격/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현관 앞 공용부위 및 계단실은 제연구역으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 또는 환기를 위한 자동개폐장치가 사업시행인가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설치위치와 개소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동별 다른 여건으로 인하여 엘리베이터 홀 창호사이드 및 자동개폐장치 설치위치가 상이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가스계량기의 검정교체주기 도래시 교체를 원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 통합형이나 동별로 접근거리 및 방식이 상이하며 주차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단지배치의 특성상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일부동은 지하주차장과 지하EV홀과 단차에 의해 경사램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배수 및 환기시설이 있으나 기후여건에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트렌치의 일부구간에는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옥외계단실/ELEV, 환기탑, 채광창, 장비반입구 및 지하저수조 환기탑 등의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탑이 설치되는 일부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해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단지모형, 카탈로그 등 분양 관련 자료를 통하여 해당시설물의 설치위치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지상의 모든 DA(주차장 환기용, 제연용, 발전기실용 등), 채광창, 옥외계단실 등의 위치 및 형태는 공사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정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조정 식재 (수종 및 배식) 및 시설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등)과 관련된 사항은 팸플릿의 이미지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디자인 (재질 및 색상 등)과 범위 및 단지경계부위 담장의 디자인 (재질 및 색상 등)과 설치구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등에 인접한 동은 소음 발생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일부 동 전.후면에 재활용품 및 쓰레기분리수거대가 인접하여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인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단지모형, 카탈로그 등 분양관련 자료를 통하여 해당시설물의 설치 위치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실외기 설치공간이 해당 시설물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오니 인접동 저층세대 입주민께서는 단지모형, 카탈로그 등 분양관련 자료를 통하여 해당시설물의 설치 위치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단지 출입구의 문주설치에 따라 401동, 408동, 409동, 410동 등 일부세대에 시야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보관대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며,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선정 후 설치되며 필로티 에 배치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소음, 분진, 주동출입 등의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주변 맘스스테이션 정류장이 설치되며 이는 어린이 통학용 차량 대기 장소로 이로 인해 소음 및 분진, 인접세대의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일부시설물(분양CG참조) 제공되며, 부대복리시설내의 추가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5(바이크스테이션)시설은 자전거 등을 수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부시설물은 제공하지 않으며, 추후 공사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일부 공간은 A/S 센터로 일정기간 사용됩니다.
- 방화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2에 따라 한국전파진흥협회(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이동통신 옥외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401동, 406동, 407동, 410동 옥상층에 설치하며, 향후이동통신 통화품질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 헬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는 발코니 전후면에 식재되는 나무의 간섭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는 전후면에 지상주차장 설치로 소음, 빛공해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07동 저층에는 작은도서관 시설이 위치하며 소음 발생 및 조망권 저해의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모형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청약하여야 하며, 해당 부속동 상부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407동 좌측에는 어린이놀이터설치로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 될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서측 계측로 404동, 405동 인근에 소음 관련 방음벽(약12M)이 설치 되어있으며, 방음벽은 본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되는 시설로 입주민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로인해 저층부일부세대의 조망 및 채광이 다소 제한될 수 있으며, 방음벽의 설치범위, 형태, 재질, 높이 등은 준공 시 소음측정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인가 당시 계획된 소음치가 주변 지역여건의 변화로 건물 완공 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 후 차량 증가로 인한 소음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철도변 방음시설은 본 사업자와 무관합니다.
- 단지 북측으로 경부선 철로가 있으며, 기차 이동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모형 및 본 현장방문 등을 통해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05동 서측 방음벽은 비상차량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일부 구간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 402동 후면에 주민운동시설 설치로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게릴라성 집중 폭우(천재지변)로 인하여 주변 맨홀등 막힘 발생으로 지하주차장 우수유입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주차장도로 외 비상차량도로 부분은 일반 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일반 차량 운행 시 그로 인한 포장 등 파손발생에 대하여는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자는 주거환경 개발사업자로서 지상주차장이 일부 지상에 설치 되었 으니 계약전에 모형 및 현장 방문 하시기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계획은 상위계획에 근거 하여 계획 하여 일부 세대는 남향을 벗어 날수 있으니 계약전에 모형 및 현장 방문 하시기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건본주택 팜플릿에 적용된 마감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 (특히 및 의장 등록 또는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 제품으로 대체사공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팜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내역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내역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재내역의 “급”은 동등품질 이상의 유사자재 적용이 가능함을 의미함)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실외기실, 대피공간, 발코니, 샤워부스, 욕조하부, 양변기 주변, 세면대 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벽(PD포함) 및 기타 조적벽 등은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가 비내력 골조 혹은 경량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설계변경 포함)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발코니, 욕실 등 바닥 단차부위는 시공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PD접점구는 욕실천장 및 가구류 내부 또는 PD 인접실 등에 설치되며 설치위치 및 형태에 따라 마감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동체감지기는 1,2층과 최상층인 경우 발코니 및 확장된 실에 설치되며 1층이 필로티일 경우 2층에만 설치합니다.
- 세대통합관리함(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이 침실 벽체에 설치되며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드레스룸의 면적 및 평면형태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내부 가구류(화장대 및 일반가구)는 불박이형 또는 시스템형으로 설치되며 타입별로 설치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합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구조를 확인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람.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전문업체가 설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목재문, 가구 및 아트월 등의 인테리어시트는 자재특성상 색감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타입별로 설치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하며,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장 내부 및 레인지후드상부장에는 각종 장비로 인하여 공간이 협소 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일체)은 제품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및 입주 전 설치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설치불가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설치 예정이며, 위치 및 조명기구 변경은 불가합니다.
- 생활환경 (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세대환기는 전열교환방식이며, 환기 유닛은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 천장에 설치되며, 덕트와 연결되는 디퓨저는 거실과 각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중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유닛 및 배관은 실외기실 천장 또는 발코니 천장에 노출 설치됩니다.
- 전열 교환기 장치는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등에 노출 설치되며 설치 위치에 따라 덕트 파이프가 꺾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내기 매립박스는 거실, 침실1만 설치되고, 스탠드 및 벽걸이형 에어컨 기준으로 설치되며, 마감덮개 및 매립연결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 및 대피공간은 건식공간으로 수전 및 배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외부에서 유입된 우수 또는 입주자가 개별 사용한 물(화분 및정수 등)의 배수가 불가능합니다.
- 일부 발코니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선홍통 설치되거나 세탁기 설치공간으로 사용되므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하며, 미관 저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는 우수 및 배수용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설치개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대피공간은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또는 결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난간설치에 따라 이삿짐 이동시 난간에 높이 등의 영향으로 일부 대형(냉장고 및 불박이장등) 이삿짐이 이동불가 할 수 있으며, 이사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발코니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대피공간이 설치되며, 출입문은 철재방화문, 외부창호는 합성수지제창 (여단야창)설치로 상이함. 또한 생활환경 및 내·외부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층 이하 세대의 대피공간은 창고로 활용가능 하며, 3층 이하 세대의 대피공간 내부의 마감 및 도어의 사양은 기준층 대피공간의 마감과 동일하게 시공합니다.
- 발코니 및 거실 빨래건조대, 벽걸이 TV 등의 설치시 매립배관 위치를 시공자가 관리소 보관중인 준공도면을 확인하고 사공하여야 하며, 발코니 및 거실 천장골조내 매립배관매관 및 급수, 급탕, 난방배관이 지나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배관파손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용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제조사, 형태, 재질, 분할, 프레임/창짝 사이즈, 유리사양, 창호기밀방항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결로현상에 따른 제반문제는 당사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 후 세대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해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당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및 배선기구류,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 등의 설치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건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개별난방(가스보일러) 설치로 인하여 기기 및 각종 배관이 주방발코니에 노출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각종 스위치, 등기구류, 콘센트, 도기류 및 수전류, 스프링클러헤드, 우수드레인 등은 본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상·하부, 좌·우 확장세대 단열재 등 마감 설치로 천정 및 벽체 등 노출될 수 있으니 충분히 검토하여 확장 또는 비확장을 선택하시기 바라며 그에 대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하부, 좌·우에 비확장 세대로 인하여 일부 단열재 등 마감 설치시 벽체 또는 발코니 공간이 작아질 수 있으니 충분히 유의하여 선택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설계관련 유의사항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외벽의 리브형태, 지붕 및 옥탑형태, 색채계획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필로티 캐노피 위치 및 고층부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제 시공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 표시, 로고사인, 외부색채, 지붕 및 옥탑형태계획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각종 인쇄물, 조감도, 단지모형 등과 상이할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본 지구의 각종 주변시설(학교, 도로망 등)은 정비계획의 변경 및 시행/허가관청, 지방자치단체, 국가시책 및 개별소유주의 이용 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1층, 2층 천정은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며, 지하주차장 1층에 대하여는 천정고 2.7M로 계획되어 있으나 차량 사양등에 따라 진출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심의과정 등에 따라 조경시설물에 따른 조경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 및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이러한 결정에 동의 및 그와 관련된 제반 권리 또는 권한을 사업주체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은 관련 법규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저층세대 및 이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당해시설의 이용으로 인하여 소음 발생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되어 있는 401동, 407동, 408동, 409동, 410동의 저층세대는 소음, 프라이버시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해시설의 지붕형태에 따라 일부 시야가 차폐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 부출입구에 인접한 401동, 402동, 403동, 408동 409동, 410동 저층 세대는 차량의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차량조명 등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상층 근접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기계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입주 후 세대 내 바닥표면의 물기를 즉시 제거해야 하며,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세대 각 실 및 발코니 외부에 설치된 창호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전압 전출, 이사 시 이삿짐 장비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조정시설 및 식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이삿짐 등은 해당 동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라며(이사 중 파손시 원상복구), 불가피하게 창호설치구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필히 창호에 보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일부 세대는 단지설계상 이사차량의 진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각 동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를 원하시면 원칙으로 하며,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단지 보행출입구를 통하여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육실, 주방, 발코니 및 아트월 등의 타일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수전 등 별도의 배수설비를 시공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하는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상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단, 단열 관련 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 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아트월, 가구, 가변벽체, 창호 옵션가구 등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가구 벽체 등의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 합니다. (단, 안목치수 산정 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는 벽지, 바름, 갈래반이, 천장물딩, 등 미세한 치수는 포함하지 않음).
- 견본주택은 기준층 세대로 꾸며져 있으며 라인별로 출입구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해당 평면도를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분양시설로 공동주택과 별도 획지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단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시공을 위하여 시공관련 샘플체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단실 현관 홀 바닥 마감재 규격 및 재질등은 시공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재는 자체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체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따릅니다.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단위세대 조명기구 공사 중 본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체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질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인접동 및 인접세대의 배지 등에 따라 세대별로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레벨 차이가 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용벽 및 자연석 쌓기가 추가로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홀은 전층 환기창 설치하고 계단실은 5개 층마다 1개소씩 환기창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1층 출입구 인접 세대의 경우 프라이버시 간섭이 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모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병화구획 등의 설치)4항에 의거 설치되는 대피공간 내부에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철차 및 설치기준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5항 에 의거 대피공간을 보일라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할시 이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현관 앞 공용부분은 주택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전실 설치 등) 시 관련법령에 의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귀책사유입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등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상품들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상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시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팸플릿 공고문의 내용은 제작과정에서 오류 오기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01동 지하층 일부벽에 전기실(발전기실 포함), 우수저류조 등 부대시설이 위치하여 비상시 또는 점검시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01동, 406동, 407동, 지하주차장 1, 2층에서 주동 진입시 후면(주차) 진입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휴에 접한 402동, 403동, 404동, 405동, 410동 아파트 계단실(승강기 및 홀 포함) 내외부 기온차로 인하여 결로로 인하여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리시 환기 등 충분하여야 합니다.
- 404동, 405동, 407동, 410동 지하주차장에서 장애주차 위치가 차도 건너편에 위치하여(해당구간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안전통로로 표시지정) 생활 및 차량운용 간 다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흐름은 막힘없이 순환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나 402동, 408동, 410동 일부 동은 막다른 구간이 발생하여 회차상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구 차량통행 시 차단기 설치 위치가 경사로 근접 설치로 운행 시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모형등을 충분히 관람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실/발전기실 등 지하 관련시설 진입부의 위치한 주차구획의 경우 유지/보수로 인한 장비이동시를 고려하여 계획이 되어있으나, 상황에 따라 차량 이동 요청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환풍등, 환기관련시설에 인접한 주차구획의 경우 환기유닛 가동 시 차량으로 바람이 발생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1층 주차장 천정고는 2.7m이상이며, 지하2층은 2.3m 이상 설치로 지하1층에 일부 택배차량이 진입가능하나, 진출입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은 당사와 무관하므로 사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계획시 일부 주차 위치가 주동 하부에 설치 되어 있으며, 주차 및 승하차시 불편함이 발생 할수 있으니 인허가 도서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학교 관련사항

- 초등학생은 천동초등학교에 배치 예정입니다.
- 중학생은 동부6학교군에 배치되며, 고등학교는 대전광역시단일학교군입니다. 학교군은 향후 학생배치 여건 변화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학급수 및 학생수용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공간은 입주 후 일정기간 A/S 센터로 운영됩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현장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치 않습니다.
-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항, 부대편의시설, 조정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 성능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현관 앞 공용부분은 주택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전실 설치 등) 시 관련법령에 의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귀책사유입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함. 특히 사용승인 전 "구경하는 집"의 운영 및 대여는 공사현장 무단점유로 간주되어 관련법령에 의거 운영자 및 대여자를 처벌토록 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주택 및 분양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산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등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시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브랜드명은 "리더스타" 사용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팸플릿 공고문의 내용은 제작과정에서 오류 오기 오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녹색건축인증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감면혜택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기 때문에 필히 본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4.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 성능수준(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기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본 아파트는「건축법」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중요도 I	ⅦI-0.216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MM등급, I~Ⅶ)으로 표기)

#### ■ 공동주택 성능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인증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득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 5.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4동 48-1, 공동주택 건축공사 건축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준공(예정)일 : 2024.12.31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탄동 173일대(48L) 층수 : 지상29층, 지하2층 면적 : 178,503.85㎡ 건축물종류 : 공동주택 설계자 : (주)보령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2021-2035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1.06.30 ~ 사용승인일 녹색건축인증(일반) 등급 : 예비인증 인증등급 : 일반(2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인증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341호, 환경부 고시 제 2016-119호, 환경부 고시 제 2019-08-01)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 2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한국부동산원장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공동주택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4동 48L 공동주택 건설공사
- 신청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대리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탄동 173일대(48L)
- 승인일 : 2021.06.30

구분	항목	성능등급	비고
가. 소음 관련 등급	1. 생활소음 차단성능	★★★★	
	2. 공동주택 차단성능	★★★★	
	3. 벽체 구조적음 차단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차단성능	★★★★	
	5. 차량소음 차단성능	★★★★	
나. 환기 관련 등급	1. 대공기	★	
	2. 개별방	★★★	
	3. 수직연속 환기	★	
	4. 수직연속 환기	★★	
	5. 수직연속 환기	★★	
다. 환열 관련 등급	1. 환열	★	
	2. 환열	★★	
	3. 환열	★★	
	4. 환열	★★	
	5. 환열	★★	

구분	항목	성능등급	비고
가. 소음 관련 등급	1. 생활소음 차단성능	★★★★	
	2. 공동주택 차단성능	★★★★	
	3. 벽체 구조적음 차단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차단성능	★★★★	
	5. 차량소음 차단성능	★★★★	
나. 환기 관련 등급	1. 대공기	★	
	2. 개별방	★★★	
	3. 수직연속 환기	★	
	4. 수직연속 환기	★★	
	5. 수직연속 환기	★★	
다. 환열 관련 등급	1. 환열	★	
	2. 환열	★★	
	3. 환열	★★	
	4. 환열	★★	
	5. 환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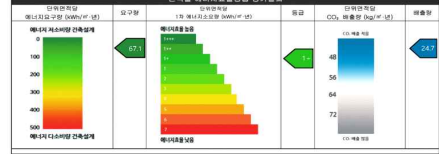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 11조 및 「주택법」 제 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한국부동산원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4동 48L 공동주택 건설공사 인증번호 : 2021-2035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1.06.30 ~ 사용승인일 녹색건축인증(일반) 등급 : 예비인증 인증등급 : 일반(2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인증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341호, 환경부 고시 제 2016-119호, 환경부 고시 제 2019-08-01)	인증번호 : 21-주-제-14-0247 평가자 : 예비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평가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종료일 인증등급 : 예비인증



구분	단위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효율등급	(kWh/m²·년)	67.1	67.1	67.1
CO2 배출량	(kg/m²·년)	106.2	106.2	106.2

구분	단위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효율등급	(kWh/m²·년)	67.1	67.1	67.1
CO2 배출량	(kg/m²·년)	106.2	106.2	106.2

한국부동산원장



※ 본 공고문에 포함된 인증서는 예비인증서로, 각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 여건 및 본인증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공사,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公示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 되었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천원)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113,234,522
	기간이자	717,496
	필요한 경비	93,701
	그 밖의 비용	7,723,439
	계	121,769,158
건축비	토공사	4,841,352
	흙막이공사	-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
	석축공사	-
	우·오수공사	918,555
	공동구공사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32,460
	도로포장공사	791,067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15,955
	정화조시설공사	-
	조경공사	8,368,509
	부대시설공사	270,223
	계	15,238,121
	공통가설공사	6,688,083
	가시시설물공사	-
	지정 및 기초공사	4,546,115
	철골공사	-
	철근콘크리트 공사	40,444,431
	용접공사	-
조적공사	5,207,805	
미장공사	7,191,689	
단열공사	8,900,153	
방수·방습공사	2,069,810	
목공사	10,037,350	
가구공사	1,507,751	
금속공사	5,882,438	
지붕 및 흙통공사	911,837	

			창호공사	18,021,816	
			유리공사	3,079,729	
			타일공사	5,464,456	
			돌공사	7,476,075	
			도장공사	3,458,919	
			도배공사	2,025,718	
			수장공사	2,747,537	
			주방용구공사	-	
			잡공사	798,740	
			계	136,460,452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2,656,026
				급탕설비공사	2,108,121
	오배수설비공사	8,981,184			
	위생기구설비공사	5,680,419			
	난방설비공사	7,219,215			
	가스설비공사	1,082,183			
	자동제어설비공사	452,710			
	특수설비공사	720,255			
	공조설비공사	4,665,130			
	계	33,565,243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17,271,753		
		정보통신공사	8,212,123		
		소방설비공사	13,009,696		
		승강기공사	4,938,535		
	계	43,432,107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7,721,492		
		이윤	13,182,980		
		계	20,904,472		
	간접비	설계비	3,200,000		
		감리비	1,781,374		
		일반분양시설 경비	1,843,004		
		분담금 및 부담금	2,697,769		
		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11,021,582		
		계	20,543,729		
	그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32,931,628		
합계			424,844,910		

■ 택지비 감정평가 금액 산출내역

(주)대한감정평가법인(㎡당 금액)	(주)중앙감정평가법인(㎡당 금액)
2,300,000원	2,170,000원

6. 택지비/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택지비 가산비	택지비에 대한 가산이자, 제세공과금 및 등기수수료,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필요적 경비	8,535,063
건축비 가산비	건축구조 형식, 주택품질향상, 인텔리전트 설치, 법정초과 복리시설, 친환경주택 건설, 법령개정에 따른 가산비, 지하주차장 층고증가 등	32,933,276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 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사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감리회사, 감리금액

※ 감리금액 및 회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	시공사 (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1,781,374,328원)
----------------	---------------	-------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계룡건설산업(주) (314-81-07954) (주)대우건설 (104-81-58180) 금호건설(주) (104-81-31309) (주)태영건설 (105-81-74543)	계룡건설산업(주) (314-81-07954) (주)대우건설 (104-81-58180) 금호건설(주) (104-81-31309) (주)태영건설 (105-81-74543)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소방 : (주)건창이엔지 542-86-01429 통신 : (주)동현기술사사무소 112-81-52173 건축 외 기타공종 : LH 자체 감리
---	--	----------------	---

**8. 견본주택 위치도**

<p><b>리더스시티 견본주택</b></p> <p>견본주택: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151-15번지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2)</li> <li>■ 관람기간 :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청약 전 사전관람은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 운영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li> <li>※ 당첨자에 한해 서류접수기간 동안 견본주택 관람을 실시할 예정입니다.</li> <li>※ 계약기간 및 예비당첨기간 내 견본주택 관람은 불가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 <a href="http://www.리더스시티.com">http://www.리더스시티.com</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 : 042) 271-9900 (10:00~17:00)</li> </ul>

**LEADERS CITY**  
리더스시티

